



◆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(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,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)

용도구분	적용규모	면적기준
주거 (공동주택) ※기숙사는 비주거에 해당	연면적 합계 500㎡ 이상의 건축물 (지하주차장, 기계실 면적은 제외)	주택1 (난방적용 공동주택)
		주택2 (주택1+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)
대형 (3,000㎡ 이상)		
소형 (500㎡ ~ 3,000㎡ 미만)		
비주거		

◆ 제출 예외대상-단독주택(제1호), 동식물원(제5호), 그 밖의 제외 가능 용도(제3호 아목, 제13호, 제16~27호)

1. 단독주택	8. 운수시설	15. 숙박시설	22.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
2. 공동주택	9. 의료시설	16. 위락시설	23. 교정 및 군사시설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	10. 교육연구시설	17. 공장	24. 방송통신시설
4. 제2종 근린생활시설	11. 노유자시설	18. 창고시설	25. 발전시설
5. 문화 및 집회시설	12. 수련시설	19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	26. 묘지 관련 시설
6. 종교시설	13. 운동시설	20. 자동차 관련 시설	27. 관광 휴게시설
7 판매시설	14. 업무시설	21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	28. 장례식장

- ✓ 단독주택(제1호), 문화 및 집회시설(제5호) 중 동·식물원은 무조건 제출하지 않음
- ✓ 제1종 근린생활시설(제3호) 중 아목(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정수장, 양수장) 및 운동시설(제13호), 위락시설(제16호) ~ 관광휴게시설(제27호)은 냉·난방설비 여부에 따라 제출여부 판단 (냉·난방 공간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)
- ✓ 「주택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」에 적합한 건축물
- ✓ 나머지 색칠 안된 부분은 연면적 합계가 500㎡ 이상이면 모두 제출 (냉·난방설비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 제출)

※ 냉·난방 설비 및 공간의 연면적 합계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여부

제출제외 가능용도	냉·난방설비 설치여부	냉·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	제출 여부
단독주택 (제1호)		관계 없음	X
동·식물원 (제5호)		관계 없음	X
그 밖의 제외가능 용도 (제3호 아목, 제13호, 제16호, 제17~27호)	O	500㎡ 이상	O
	O	500㎡ 미만	X
	X	관계 없음	X



◆ 적합판정 요건 (2023.02.28 일부개정)

- ✓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, EPI 점수 65점 이상 (공공기관 건물 74점 이상 취득)
- ✓ 해당항목이 반영된 설계도서, 계산서 및 시방서 첨부, 부득이한 경우 설치예정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
- ✓ **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가능** ※사전확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인정
- ✓ 연면적 3,000㎡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,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㎡ 이상인 모든 용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성능해석 프로그램 (ECO2-OD)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 (공동주택으로 확대 및 기준 에너지소요량 설정 예정)
- ✓ **연면적 3,000㎡ 이상인 민간업무 또는 교육연구시설일 경우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이 1+등급, 공공업무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1++ 등급 적합**

◆ 사용승인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제출

- ✓ 건축허가 시,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에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건축주(또는 감리자)가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

◆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시점

- ✓ 건축허가를 받았거나, 허가를 신청 혹은 허가 신청을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: 종전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가능
- ✓ 사용승인을 득하고,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: 현행 기준 적용

◆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예외

구 분	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+ 등급 이상(단, 공공기관의 경우 1++등급 이상) 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사항만 제출 (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적합 여부 판단 안함) 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검토서 미제출(갑지만 제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물을 증축, 용도변경,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사항만 제출 (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적합 여부 판단 안함) • 별도 증축의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50% 이상을 증축하면서 증축 연면적이 2,000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제출해야 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같은 대지 내 500㎡ 미만의 건축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연면적 합계가 2,000㎡ 미만인 경우 의무사항만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합이 200kWh/㎡·yr(1+등급)일 경우 의무사항만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,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규칙 별지 에너지절약계획서만 제출 (갑지만 제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제출